

아동학대 공익광고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인식의 관계 연구

서복현[†]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Announcement on Child Abuse and the Perception of Reporting by People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Seo Bokhyun[†]

Dept of Social Welfare,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act of reporting child abuse by peopl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is a way to detect long-term incidents of child abuse in early stages and to prevent a vicious cycle of social crimes. Thus, this study intends to enhance the reporting of child abuse through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eopl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through th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on child abuse.

Methods : First, in order to identif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Second, in ord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variables, Cronbach α was calculated. Third, in order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peopl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and the perception of reporting, a t-test (verification) and One-way ANOVA were conducted. Fourth, in order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 : The results show that peopl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did not perceive th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on child abuse positively and it varied depending on their job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on child abuse and sub-factor of perceptions of reporting showed that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in reliability, interest, understanding, perceiving th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on child abuse, perceiving severity and effectiveness, whereas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in perceiving hazards.

Conclusion : The education for preventing child abuse is required by the job type of people obliged to report. It is necessary to convey the message of effectiv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The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on child abuse must be nationwide and long-term projects.

Key Words : child abus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peopl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perception of reporting

[†]교신저자 : 서복현, bok7676@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대의 한국 사회는 가족의 변화 및 가족의 기능 상실로 인하여 아동 학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와 관련된 피해가 아동 개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신체적 및 행동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은 성인의 소유물로 인식되어져 오고 있으며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되어져 오고 있어 아동학대는 드러나게 되면 가해정도가 상당히 진행되어져 있는 상태가 대다수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인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으므로 자신의 피해를 타인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아동학대는 오랜 기간 지속되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은 아동기 이후 성인기까지도 폭력이나 범죄 등의 문제 행동으로 귀결되기도 하여 장기적으로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광혁, 2009).

그러므로 이러한 학대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 및 지역사회, 학교, 국가 등이 함께 개입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언론 보도 및 각종 시사를 통해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법 개정 및 법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더욱 보완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동 학대 사례 중 2017년 친부가 5살 된 딸을 유기하고 은폐했던 사건, 2016년 가스배관을 타고 배고픔에 탈출했던 인천 11살 여자 아이는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문제의 범위와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었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국가적 차원 및 사회적 개입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학원강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신고의무자에 두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법제처, 2000).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에 대한 장기적인 사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사회적인 범죄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학대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의 신고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개입으로 하여금 아동학대가 상습화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신고의무자는 무엇보다도 아동을 주로 대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전문적·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파악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여부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김준미, 2006). 이에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2016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 29,671건 중 신고의무자가 32 %, 비신고의무자가 68 %로 조사되었다. 실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비신고의무자 신고율 보다 낮게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초·중·고교 직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었다. 신고의무자들이 이러한 학대 상황을 학대로 인지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가 더 많을 수 있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연구가 필요하다. 다원화되는 사회에서는 점점 허물어져 가는 공공의식을 살리고, 건전한 정신문화를 복돋우며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데(이낙선, 2005), 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바로 공익광고라 할 수 있다. 공익광고는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을 유도한다(이정현과 이영희, 2007). 즉, 아동학대와 관련한 공익광고는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를 접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정, 2012).

일찍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감시키고자 하는 국내 TV공익광고도 2003년 이래로 10년 이상 꾸준히 방영되어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대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아동학대 캠페인의 필수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정의태와 최장섭, 2011). 광고는 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가치관 및 문화를 강화 혹은 변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가치의 반영은 공익광고에서 더 강조되거나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공익광고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하여 그 사회의 가치를 표현함(서윤경, 2004)으로써 대중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국가의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수단적 역할을 하게 된다(이정현, 2007; 최수진, 2005; 한연숙, 2007; 홍전희, 2004). 이러한 아동학대 공익광고는 아동학대의 의무신고자의 신고인식에 신고행동의 결정적인 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공익광고가 아동학대 의무신고자의 신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공익광고의 발전과 효과적인 표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공익광고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표 1과 같으며, 독립변수로는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 관심도, 이해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아동학대 신고인식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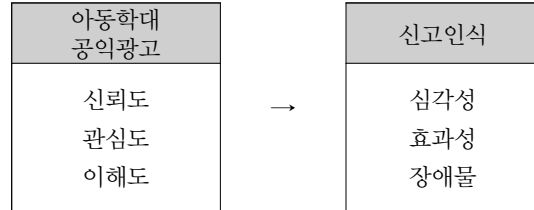


표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 표집대상

본 연구의 표집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표 2. 표집대상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66	33.0
	여	134	67.0
연 령	30세 미만	78	39.0
	30~39세	98	49.0
	40세 이상	24	12.0
학 력	고졸 이하	-	-
	전문대졸	-	-
	대졸	183	91.5
결혼여부	대학원졸	17	8.5
	미혼	91	45.5
	기혼	109	54.5
자녀수	없다	123	61.5
	1명	40	20.0
	2명 이상	37	18.5
직 업	교사	54	27.0
	의료인	32	16.0
	사회복지사	87	43.5
	사회복지직 공무원	27	13.5
근무기간	5년 미만	75	37.5
	5~10년 미만	73	36.5
	10년 이상	52	26.0
신고경험	있다	7	3.5
	없다	193	96.5
계		200	100.0

같다.

총 200명 중 성별로는 여자가 67.0 %로 남자 33.0 %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49.0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세 미만 39.0 %, 40세 이상 12.0 %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91.5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학원 졸업은 8.5 %이었다.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이 54.5 %로 미혼 45.5 %보다 많았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없는 신고의무자가 61.5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명 20.0 %, 2명 이상 18.5 %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사회복지사가 43.5 %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교사 27.0 %, 의료인 16.0 %, 사회복지직 공무원 13.5 % 순이었다. 근무기간별로는 5년 미만이 37.5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10년 미만 36.5 %, 10년 이상 26.0 %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경험별로는 신고경험이 없는 신고의무자가 96.5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 변수의 신뢰성 검증

신뢰도 검증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문항으로 이루어진 문항들의 일치성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용된다. 신뢰도 분석 절차는 내적 일치도 방법에 의한 Cronbach α 값을 이용하여 각 문항간의 일치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측정도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 α 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인식 0.99, 신고 인식 0.71로, 모두 0.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 변수의 신뢰도 검증

구 분	문항 수	Alpha
아동학대 공익광고 인식	신뢰도	0.97
	관심도	0.98
	이해도	-
	아동학대 공익광고 인식	0.99
신고 인식	심각성 인식	0.73
	효과성 인식	0.88
	장애물 인식	0.64
	신고 인식	0.71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둘째,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인식과 신고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독립 t-검증)과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를 실시하였다. 넷째,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orrelation(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유의수준 α 는 .0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동학대 공익광고 인식

1)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뢰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58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신고의무자가 남자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30~39세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최종학력별로는 대졸인 신고의무자가 대학원졸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인 신고의무자가 미혼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20$, $p<.05$).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신고의무자는 있는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4.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

	구 분	n	Mean	SD	t or F	p
성 별	남	66	2.48	1.24	-0.77	0.441
	여	134	2.63	1.32		
연 령	30세 미만	78	2.61	1.32	0.65	0.524
	30~39세	98	2.50	1.24		
	40세 이상	24	2.83	1.43		
최종학력	대졸	183	2.60	1.30	0.46	0.650
	대학원졸	17	2.45	1.23		
결혼여부	미혼	91	2.37	1.13	-2.20*	0.029
	기혼	109	2.76	1.39		
자 녀 수	없다	123	2.47	1.22	1.72	0.182
	1명	40	2.91	1.48		
	2명 이상	37	2.59	1.29		
직 업	교사	54	3.06	1.57	3.69*	0.013
	의료인	32	2.49	1.24		
	사회복지사	87	2.34	1.08		
	사회복지직 공무원	27	2.51	1.16		
근무기간	5년 미만	75	2.55	1.28	0.66	0.520
	5~10년 미만	73	2.50	1.24		
	10년 이상	52	2.76	1.38		
신고경험	있다	7	2.95	1.41	0.71	0.504
	없다	193	2.57	1.29		
	전체	200	2.58	1.29		

* $p<.05$

직업별로는 교사가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사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며, 직업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69$, $p<.05$). 근무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인 신고의

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나 근무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신고경험별로는 신고경험이 있는 신고의무자가 그렇지 않은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기혼인 신고의무자와 교사가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2)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관심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5점 만

점 중 전체 평균이 2.59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신고의무자가 남자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30~39세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별로는 대졸인 신고의무자가 대학원졸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5.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

구 분		n	Mean	SD	t or F	p
성 별	남	66	2.47	1.23	-0.92	0.360
	여	134	2.65	1.31		
연 령	30세 미만	78	2.62	1.29	0.65	0.522
	30~39세	98	2.51	1.24		
	40세 이상	24	2.83	1.43		
최종학력	대졸	183	2.60	1.29	0.52	0.609
	대학원졸	17	2.44	1.23		
결혼여부	미혼	91	2.41	1.09	-1.90	0.059
	기혼	109	2.74	1.41		
	없다	123	2.50	1.19		
자 녀 수	1명	40	2.91	1.48	1.57	0.211
	2명 이상	37	2.56	1.32		
	교사	54	3.08	1.55		
직 업	의료인	32	2.43	1.27	3.90*	0.010
	사회복지사	87	2.37	1.07		
	사회복지직 공무원	27	2.51	1.11		
근무기간	5년 미만	75	2.55	1.26	0.59	0.554
	5~10년 미만	73	2.51	1.23		
	10년 이상	52	2.75	1.39		
신고경험	있다	7	2.75	1.56	0.28	0.790
	없다	193	2.58	1.28		
전체		200	2.59	1.28		

* p<.05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인 신고의무자가 미혼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나 결혼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신고의무자는 있는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교사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사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90, p<.05$). 근무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신고경험별

로는 신고경험이 있는 신고의무자가 그렇지 않은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나 신고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교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3)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이해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92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신고의무자가 여자 신고의무자보다 아

표 6.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

구 분		n	Mean	SD	t or F	p
성 별	남	66	2.94	1.30	0.15	0.884
	여	134	2.91	1.34		
연 령	30세 미만	78	3.01	1.29	2.25	0.108
	30~39세	98	2.74	1.33		
	40세 이상	24	3.33	1.34		
최종학력	대졸	183	2.94	1.33	0.70	0.491
	대학원졸	17	2.71	1.31		
결혼여부	미혼	91	2.82	1.23	-0.95	0.345
	기혼	109	3.00	1.40		
자녀수	없다	123	2.84	1.29	0.67	0.511
	1명	40	3.10	1.43		
	2명 이상	37	3.00	1.33		
직업	교사	54	3.44	1.48	5.72**	0.001
	의료인	32	2.94	1.27		
	사회복지사	87	2.54	1.21		
	사회복지직 공무원	27	3.07	1.07		
근무기간	5년 미만	75	2.88	1.28	0.98	0.378
	5~10년 미만	73	2.81	1.34		
	10년 이상	52	3.13	1.36		
신고경험	있다	7	3.14	1.46	0.41	0.694
	없다	193	2.91	1.32		
전체		200	2.92	1.32		

** p<.01

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30~39세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최종학력별로는 대졸인 신고의무자가 대학원졸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나 최종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인 신고의무자가 미혼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신고의무자는 있는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업별로는 교사가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사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72, p<.01$). 근무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나 근무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신고경험별로는 신고경험이 있는 신고의무자가 그렇지 않은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교사

표 7.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인식

구분	n	Mean	SD	t or F	p
성 별	남	66	2.54	-0.75	0.457
	여	134	2.67		
연 령	30세 미만	78	2.66	0.83	0.437
	30~39세	98	2.54		
	40세 이상	24	2.90		
최종학력	대졸	183	2.64	0.54	0.598
	대학원졸	17	2.48		
결혼여부	미혼	91	2.45	-1.89	0.060
	기혼	109	2.78		
자녀 수	없다	123	2.53	1.53	0.219
	1명	40	2.93		
	2명 이상	37	2.63		
직업	교사	54	3.12	4.14**	0.007
	의료인	32	2.52		
	사회복지사	87	2.38		
	사회복지직 공무원	27	2.58		
	5년 미만	75	2.59		
근무기간	5~10년 미만	73	2.54	0.69	0.502
	10년 이상	52	2.80		
	있다	7	2.88		
신고경험	없다	193	2.62	0.45	0.666
	전체	200	2.63		

** p<.01

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4)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63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신고의무자가 남자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공익광고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30~39세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최종학력별로는 대졸인 신고의무자가 대학원졸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인 신고의무자가 미혼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자녀가 없는 신고의무자는 있는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자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교사가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가장 인식하였고, 사회복지사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14, p<.01$). 근무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5~10년 미만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고경험별로는 신고경험이 있는 신고의무자가 그렇지 않은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교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2. 신고 인식

1) 신고 심각성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심각성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42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신고 심각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신고의무자가 남자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심각성 인식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신고 심각성 인식이 가장 높았고, 30~39세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심각성 인식이 낮았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최종학력별로는 대졸인 신고의무자가 대학원졸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심각성 인식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여부별로는 미혼인 신고의무자가 기혼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심각성 인식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없는 신고의무자일수록 신고 심각성 인식이 높았으나 자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신고 심각성 인식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사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심각성 인식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무기간별로는 근무기간이 많은 신고의무자일수록 신고 심각성 인식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신고경험별로는 신고경험이 없는 신고의무자가 있는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심각성 인식이 높았으나 신고경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신고 심각성 인식이 높았으며, 신고의무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8. 신고 심각성 인식

	구 분	n	Mean	SD	t or F	p
성 별	남	66	4.41	0.11	-0.24	0.812
	여	134	4.42	0.12		
연 령	30세 미만	78	4.42	0.11	0.85	0.427
	30~39세	98	4.40	0.13		
	40세 이상	24	4.43	0.12		
최종학력	대졸	183	4.42	0.12	0.41	0.690
	대학원졸	17	4.40	0.12		
결혼여부	미혼	91	4.43	0.11	1.81	0.072
	기혼	109	4.40	0.13		
자 녀 수	없다	123	4.43	0.11	1.54	0.216
	1명	40	4.41	0.12		
	2명 이상	37	4.39	0.14		
직 업	교사	54	4.42	0.14	0.95	0.418
	의료인	32	4.41	0.12		
	사회복지사	87	4.40	0.11		
	사회복지직 공무원	27	4.44	0.10		
근무기간	5년 미만	75	4.41	0.11	0.13	0.879
	5~10년 미만	73	4.42	0.12		
	10년 이상	52	4.41	0.13		
신고경험	있다	7	4.40	0.07	-0.51	0.626
	없다	193	4.42	0.12		
	전체	200	4.42	0.12		

2) 신고 효과성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효과성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68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신고 효과성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신고의무자가 남자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효과성 인식이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신고의무자일수록 신고 효과성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졸인 신고의무자가 대졸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효과성 인식이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인 신고의무자가 미혼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효과성 인식이 높았으며,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96, p<.01$).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신고의무자가 신고 효과성 인식이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는 신고의무자는 있는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효과성 인식이 낮았으며, 자녀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84, p<.01$).

직업별로는 교사가 신고 효과성 인식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효과성 인식이 낮았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8.84, p<.001$). 근무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신고 효과성 인식이 가장 높았고, 5~10년 미만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효과성 인식이 낮았으나 근무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신고경험별로는 신고경험이 없는 신고의무자가 있는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효과성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신고 효과성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기혼인 신고의무자와 자녀가 1명인 신고의무자, 그리고 교사가 다른 신고의무자

표 9. 신고 효과성 인식

	구분	n	Mean	SD	t or F	p
성별	남	66	2.61	0.84	-0.71	0.481
	여	134	2.71	0.96		
연령	30세 미만	78	2.63	0.89	0.79	0.457
	30~39세	98	2.66	0.89		
	40세 이상	24	2.89	1.14		
최종학력	대졸	183	2.67	0.92	-0.08	0.934
	대학원졸	17	2.69	0.99		
결혼여부	미혼	91	2.47	0.66	-2.96**	0.003
	기혼	109	2.85	1.06		
자녀수	없다	123	2.56	0.77	4.84**	0.009
	1명	40	3.07	1.18		
	2명 이상	37	2.62	0.96		
직업	교사	54	3.19	1.15	8.84***	0.000
	의료인	32	2.51	0.79		
	사회복지사	87	2.51	0.77		
	사회복지직 공무원	27	2.36	0.53		
근무기간	5년 미만	75	2.61	0.86	1.78	0.172
	5~10년 미만	73	2.59	0.83		
	10년 이상	52	2.88	1.10		
신고경험	있다	7	2.54	0.84	-0.42	0.686
	없다	193	2.68	0.92		
	전체	200	2.68	0.92		

** p<.01, *** p<.001

보다 신고 효과성 인식이 높았다.

3) 신고 장애물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장애물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42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신고 장애물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신고의무자가 여자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장애물성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39세인 신고의무자가 신고 장애물 인식이 가장 높았고, 30세 미만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장애물 인식이 낮았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42, p<.05). 최종학력별로는 대학졸인 신고의무자가 대졸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장애물 인식이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인 신고의무자가 미혼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장애물 인식이 높았으나 결혼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많은 신고의무자일수록 신고 장애물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교사가 신고 장애물 인식이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장애물 인식이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근무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10년 미만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장애물 인식이 높았으나 근무기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신고경험별로는 신고경험이 없는 신고의무자가 있는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장애물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신고 장애물 인식

구 분		n	Mean	SD	t or F	p
성 별	남	66	2.94	0.19	1.39	0.167
	여	134	2.90	0.14		
연 령	30세 미만	78	2.88	0.15	3.42*	0.035
	30~39세	98	2.94	0.16		
	40세 이상	24	2.92	0.15		
최종학력	대졸	183	2.91	0.16	-0.79	0.441
	대학원졸	17	2.94	0.14		
결혼여부	미혼	91	2.91	0.15	-0.69	0.493
	기혼	109	2.92	0.17		
자 녀 수	없다	123	2.91	0.15	0.49	0.612
	1명	40	2.92	0.19		
	2명 이상	37	2.94	0.15		
직 업	교사	54	2.94	0.20	1.16	0.325
	의료인	32	2.90	0.18		
	사회복지사	87	2.92	0.13		
	사회복지직 공무원	27	2.87	0.13		
근무기간	5년 미만	75	2.91	0.16	0.28	0.759
	5~10년 미만	73	2.91	0.18		
	10년 이상	52	2.93	0.14		
신고경험	있다	7	2.90	0.14	-0.28	0.785
	없다	193	2.92	0.16		
전체		200	2.92	0.16		

* p<.05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신고 장애물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연령이 30~39세인 신고 의무자가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장애물 인식이 높았다.

4) 신고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71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신고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신고의무자가 남자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인식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

로는 40세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신고 인식이 가장 높았고, 30~39세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인식이 낮았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최종학력별로는 대졸인 신고의무자가 대학원 졸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인식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인 신고의무자가 미혼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인식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1명인 신고의무자가 신고 인식이 가장 높았고, 2명 이상인 신고의무자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인식이 낮았으나 자녀수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11. 신고인식

	구 분	n	Mean	SD	t or F	p
성 별	남	66	3.69	0.18	-1.04	0.301
	여	134	3.72	0.20		
연 령	30세 미만	78	3.71	0.17	1.03	0.359
	30~39세	98	3.69	0.20		
	40세 이상	24	3.75	0.22		
최종학력	대졸	183	3.71	0.19	0.25	0.805
	대학원졸	17	3.69	0.19		
결혼여부	미혼	91	3.68	0.14	-1.51	0.133
	기혼	109	3.72	0.22		
	없다	123	3.70	0.16		
자 녀 수	1명	40	3.77	0.26	2.64	0.074
	2명 이상	37	3.68	0.20		
직 업	교사	54	3.79	0.24	4.59**	0.004
	의료인	32	3.68	0.16		
	사회복지사	87	3.67	0.17		
	사회복지직 공무원	27	3.68	0.10		
근무기간	5년 미만	75	3.70	0.18	0.73	0.481
	5~10년 미만	73	3.70	0.18		
	10년 이상	52	3.73	0.23		
신고경험	있다	7	3.68	0.19	-0.33	0.749
	없다	193	3.71	0.19		
	전체	200	3.71	0.19		

** p<.01

직업별로는 교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인식이 높았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59$, $p<.01$). 근무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10년 미만인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고경험별로는 신고경험이 없는 신고의무자가 있는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인식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신고 인식이 높았으며, 교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인식이 높았다.

3. 변수간의 상관관계

아동학대 공익광고, 신고 인식간의 하위요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 인식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r=.797$, $p<.001$)와 관심도($r=.707$, $p<.001$), 이해도($r=.747$, $p<.001$), 아동학대 공익광고 인식($r=.714$, $p<.001$), 그리고, 심각성 인식($r=.542$, $p<.001$)과 효과성 인식($r=.71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장애물인식($r=-.42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한 신뢰도와 관심도, 이해도,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인식이 높일수록, 장애물 인식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신고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2. 변수간의 상관관계

구 분	1	2	3	4	5	6	7
1. 신뢰도	1						
2. 관심도	0.779***	1					
3. 이해도	0.741***	0.629***	1				
4. 아동학대 공익광고 인식	0.692***	0.693***	0.775***	1			
5. 심각성 인식	0.327***	0.352***	0.396***	0.356***	1		
6. 효과성 인식	0.699***	0.702***	0.682***	0.704***	0.266***	1	
7. 장애물 인식	-0.258***	-0.256***	-0.325***	-0.271***	0.398***	-0.180*	1
8. 신고 인식	0.797***	0.707***	0.747***	0.714***	0.542***	0.713***	-0.425***

* p<.05, ** p<.01, *** p<.001

IV. 고 찰

설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인식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공익광고를 인식함에 있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63으로,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별, 최종학력별로 각각 여성, 40세 이상, 대학원졸 이상인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공익광고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옥순(2010)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연구 결과를 보였다. 설문에 답한 신고의무자 중 결혼 여부와 자녀의 유무도 신뢰도, 관심도, 이해도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교사가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가장 인식하였고, 사회복지사는 다른 신고의무자보다 아동학대 공익광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14, p<.01). 근무기간과 신고경험별로도 각각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김준미(2006)의 연구 결과 학력이 높고, 직업에 따라 사회복지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학대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결혼유무, 자녀의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의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71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신고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40세 이상, 대학원졸 이상 신고의무자가 신고 인식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혼, 1명의 자녀를 둔 신고의무자가 신고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 이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직업별로 교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신고의무자보다 신고 인식이 높았으며,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59, p<.01). 또한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신고 경험이 없는 신고의무자가 신고 인식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셋째, 아동학대 공익광고, 신고인식간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결과, 신뢰도, 관심도, 이해도, 아동학대 공익광고 인식, 심각성 인식, 효과성 인식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장애물인식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V. 결 론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고의무자에 따른 직업유형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예방 교육에 있어 아동학대의 신고장애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2. 실효성 있는 공익광고의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여러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세미나 개최를 진행할 때도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3. 아동학대 공익광고 및 공익캠페인이 다른 공익광고 및 캠페인에 비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의 사건 발생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잠깐의 이슈거리일뿐 본질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체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공익광고가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어 아동학대가 발생건수가 감소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광혁(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5.
- 김수정(2012).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준미(200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인식과 신고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법제처(2000). *아동복지법*.
- 서윤경(200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낙선(2005). 공익캠페인에 대한 수용자 인식 조사: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시연(200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조사 연구: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현, 이영희(200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표현연구. *디자인여성학회지*, 3(1), 81-95.
- 이정현(200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표현연구: BTL 매체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의태, 최장섭(2011).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공익광고전략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1(2), 63-72.
- 조옥순(201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사회적자본이 신고인식과 신고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벤처창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수진(200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인식이 신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연숙(2007).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고의무자 인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전희(2004).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go.kr/new/.